

의안번호	제 463호
의 결 연 월 일	2012년 3월 15일 (제 318 회)

-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  
성 명 서 채 택 의 건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안연월일	2013년 3월 15일

-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  
성명서 채택의 건

의안 번호	463
----------	-----

제안연월일 : 2013년 3월 15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1. 제안사유

- 최근, 2009년 대법원 판결로 중지되었던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이 개발논리를 앞세워 추진하고 있는바,
- 청정괴산의 자연환경 보전과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인 한강수계를 파괴시키는 행위인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 2. 제안내용

- 충청도민의 결집과 대법원 판결로 중단되었던 문장대온천개발 재추진 규탄
- 상주시 및 지주조합의 온천개발 즉각 중지 촉구
- 향후 충청북도의회의 개발저지를 위한 의지 표명

- 문장대온천개발 저지를 위한 -  
성 명 서

최근, 경북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은 개발논리를 앞세워 국가적 청정지역인 우리 괴산 일대에 충북도민의 결집과 대법원 판결로 저지되었던 온천개발을 또다시 추진하여 충북 도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우리 충북도민은 그간 문장대 온천개발 시도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다가 결국 두 번에 걸친사법부의 판단을 받고서야 중단되었던 일련의 사태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아픔으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온천개발사업을 재추진 하는 것은 양 지역주민의 갈등을 다시 심화시키고 우리 충북도민의 환경보전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은 물론 사법부의 합법적인 판결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임을 강력히 밝혀둔다.

그동안 우리 충북도민은 청정괴산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산막이옛길, 화양계곡 등 전국민의 사랑을 받는 휴양지로 만들었으며 지난, 2011년도에는 2015년 세계유기농엑스포를 유치하여 세계인들에게 우리 청정 자연환경을 선보일 준비에 한창이다.

이웃에 큰 경사가 있으면 서로 돕는 것이 우리의 미풍양속 일지인데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개발 지주조합은 자기의 이익만을 위한 온천개발을 다시 추진하여 160만 충북도민은 물론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젖줄인 한강수계를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엄청난 환경재앙을 가져오게 될 행위를 앞장서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이웃인 충북도민은 물론 국가에 대한 범죄행위이며 우리 자손에게 청정한 자연을 남겨주어야 할 책무를 망각함으로써 씻을 수 없는 죄인으로 후세에 기억되어 질 것이다.

이에 충청도의회는 문장대 온천개발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초당적 자세로 정부, 국회에 개발저지를 위한 협조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 지방의원, 그리고 160만 도민들이 모두 하나되어 충북사랑의 애향심으로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 일에 모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3. 3. 15.

충 청 북 도 의 회